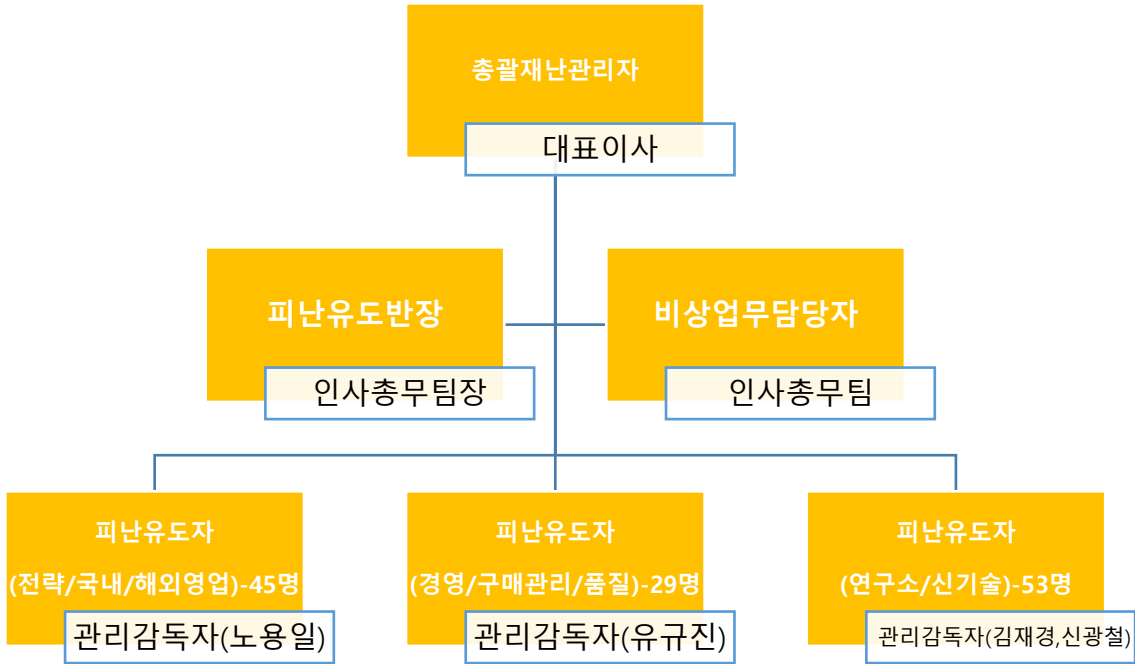


# 화재 및 사고 발생 시 유형별 대응 매뉴얼

## ■ 화재 발생 시 대응 매뉴얼

### ○ 피난 유도 조직 구성



### ○ 피난 유도 조직의 임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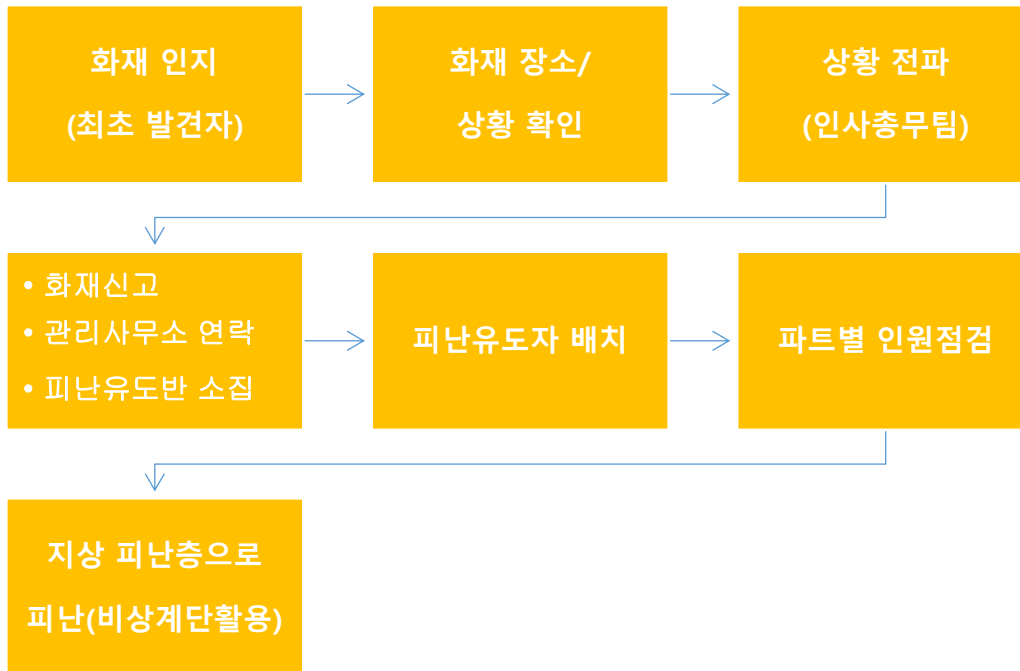
- ▶ 총괄재난관리자 : 피난 대응 총괄 및 지휘
- ▶ 피난유도반장 : 각 구역별 피난경로 확인 및 피난 유도
- ▶ 비상업무담당자 : 관리사무소, 방재실 등 유관기관 연락 및 소통
- ▶ 피난유도자 : 각 파트별 집결지 집결 및 인원점검, 피난 유도

파트	집결지	호실
전략/국내/해외영업	쇼룸	1204호
경영/구매/품질	경영지원본부	1213호
연구소/신기술연구소	12층 로비	메인 엘리베이터 앞

- 각 팀장들 인솔하에 집결지 집결

- 피난유도자 및 각 팀장들 함께 팀원 및 본부원 인원 점검 후 피난

### ○ 피난유도 절차



### ○ 피난 시 기본원칙

- ▶ 피난은 화재층 우선, 직상·하층 순으로 피난유도
- ▶ 가장 위험에 노출된 파트를 우선적으로 대피
- ▶ 옥상으로의 피난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금지
- ▶ 부상자 발생 등 긴급한 경우 예외적으로 비상용승강기를 이용하되, 피난용승강기 이외의 승강기에 의한 피난은 원칙적으로 금지
- ▶ 피난유도자 상호 간 및 지휘본부와의 통신시스템을 확보

### ○ 피난 시 기본원칙

- ▶ 건물 내 피난경로의 안전성을 확인 (비상계단, 복도 등)
- ▶ 피난유도를 위한 충분한 인적자원을 확보하여 배정
- ▶ 피난용 승강기 등 비상대피수단을 확인
- ▶ 정기적으로 화재예방교육 및 피난 훈련 실시
- ▶ 피난시설의 위치,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 정보를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안내

○ 피난유도자 세부수칙

피난유도자 배치	피난안내방송
	
<p>출입구(비상구), 승강기 승강장, 비상계단 앞, 막다른 통로 등에 배치</p>	<p>침착한 어조로 동일 내용을 2회 이상 반복</p>
상황실 보고	피난용품 활용
	
<p>대피하지 못한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상황실로 보고</p>	<p>안내봉, 헤드랜턴, 피난유도자 야광조끼 등을 활용</p>

## ■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유형별 대응 매뉴얼

### ○ (응급조치 후 바로 근무가 가능한) 경미한 재해 발생시

- ▶ 작업중지 및 응급조치
- ▶ 상급자(또는 관리감독자) 및 부서장에게 보고
- ▶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  - (회사, 안전·보건 관리업체)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
### ○ 3일 이상 휴업 재해 발생시

- ▶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
  -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, 작업중지 및 대피
- ▶ 응급조치 및 신고
  - 재해자 응급조치, 사고 발생 시 상급자(또는 관리감독자) 및 부서장에게 보고
  - 치료 경과 파악 및 보고
- ▶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  -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  - (회사, 안전·보건 관리업체)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  - (회사→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)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

### ○ 중대 재해 발생시

#### ※ 중대재해

-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
- 3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
-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
- ▶ 작업중지 및 긴급대피
  - 사고 발생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 중지,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
- ▶ 응급조치 및 신고
  - 재해자 응급조치, 사고 발생 시 상급자(또는 관리감독자) 및 부서장에게 보고
  -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즉시 보고
- ▶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
  -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  - (회사, 안전·보건 관리업체) 산업재해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
  - (회사→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)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

## ■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시 응급처치 요령

### 1. 현장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

-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환자에게 자신이 응급처치자임을 알린다.
- 원칙적으로 의료기구나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는다.
- 빠른 시간 내에 전문 응급의료진에게 인계한다.
- 응급환자에 대한 생사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.

### 2. 응급처치의 목적

- 응급환자의 생명 구조
- 통증 감소 및 악화 방지
-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복을 도움
- 장애의 정도 경감

### 3. 외상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

- 근로 중 상처가 났을 경우에는 상처부위를 깨끗한 물(수돗물, 생수)로 씻어준다. 이후 천으로 누르거나 감아서 출혈을 막아준다.
- 출혈 시에는 즉시 지혈 처치를 하여야 한다.
- 상처를 더욱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.
- 상처 부위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고 치료하면 통증은 경감한다.

### 4.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

- 재해발생 기계의 정지 및 재해자 구출
- 긴급병원 후송 :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구급대, 병원 등에 연락하여 긴급 후송
- 보고 및 현장보존 : 관리감독자 등 책임자에게 알리고, 사고원인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 보존

### 5. 응급처치

-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, 뜻하지 않은 사고 발생 시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 적절한 처치와 보호를 통해 고통을 덜어 주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다.

### 6. 산업재해 발생보고

- 산업재해(3일 이상 요양)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고, 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.

- 중대재해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, 팩스 등으로 보고  
보고사항 :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, 조치 및 전망, 그 밖의 중요사항

## ■ 재난 및 각종 사건사고 유형별 대응체계

